KOSHA GUIDE

C - 84 - 2013

(4) 크레인을 사용하여 장비의 반입·반출, 부재의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방법 및 순서 등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.

6. 공통 안전사항

- (1)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각 세부공정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등급에 따른 관리대상 공정을 정하여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작업하여야 한다.
- (2)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설계도서, 현장조건, 시행하고자 하는 안전조 치사항, 투입되는 근로자 및 건설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험요인 을 제거하거나 위험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 을 시작하여야 한다.
- (3) 고소작업에 따른 근로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추락 및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4)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승강설비 및 안전난간을 갖추어야 한다.
- (5) 충전전로의 인근에서 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의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·기계장치 작업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- (6) 화재의 위험이 있는 용접 및 용단 작업장소에는 소화기, 방화수 등을 비치하여 초기 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(7) 절단, 절삭, 용접작업 시 감전방지를 위해 접지 및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분전반의 전원을 사용하고, 전선의 피복손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8) 강풍시 고소에 있는 상부 자재 등의 맞음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(9) 부재의 반입 및 반출, 가조립을 위한 작업 시 작업 지휘자를 정하여 작업을